

화순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5. 6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5. 6. 15

다. 상 정 일 자 :

- 2005. 7. 4(제13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산업·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)
- 2005. 12. 9(제13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산업·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도시경제과장 양정열

나. 제안사유

-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그 지원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지원사업 적용범위 및 지원내용(안 제3조)

-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득한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

○ 지원사업 대상(안 제4조)

- 단지내 도로 및 가로등·보안 등의 설치 및 보수
- 하수도 보수 및 준설
-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의 설치 및 보수
-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

○ 지원방법(안 제5조)

- 관리주체의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.

○ 심의위원회 구성(안 제6조)

-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의원, 공무원, 화순군 사회단체장, 건축사 등 9인이하로 구성함.

○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(안 제11조)

-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화순군 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.

○ 관련근거 : 주택법 제43조제8항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조석호)

- 본 제정 조례안은 「주택법」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줌으로서, 서민입주자의 관리비용 일부 부담 경감은 물론,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,
- 반면에 이에 따른 소요예산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재정확보 등의 대책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,
- 아울러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또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답변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- 토론자 : 박광재 의원
- 별지 수정안 참조

6. 심사결과

“수정가결”

7. 붙임 : 화순군 공동주택지원 조례안

화순군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5. 12. 9

제안자 : 박광재 의원

1. 수정이유

-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수정함.

2. 수정 주요골자

- 제3조 제1항 “단,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관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”는 단서를 신설 함.
- 제6조 제3항 중에 “군의원, 화순군사회단체장, 건축사 각1인으로 구성한다”를 “건축사 각 1인 및 군의원 2명으로 구성한다”로 함.
- 제9조 “제3항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,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”를 삽입 함.

화순군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화순군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 제1항 “단,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관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”는 단서를 신설한다.

안 제6조 제3항 중에 “군의원, 화순군사회단체장, 건축사 각1인으로 구성한다”를 “건축사 각 1인 및 군의원 2명으로 구성한다”로 수정한다.

안 제9조 “제3항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“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, 장소 및 안전 등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”

수정안 조문대비표

| 현행 | 수정안 |
|--|--|
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| <p>제1조(목적) (원안과 같음)</p> |
| <p>제2조(종합계획수립) 화순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</p> | <p>제2조(종합계획수립) (원안과 같음)</p> |
| <p>제3조(적용범위) ①지원대상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. <u>(단서신설)</u></p> <p>②지원내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.</p> | <p>제3조(적용범위) ①----- ----- -----</p> <p><u>단,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관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.</u></p> <p>②(원안과 같음)</p> |
| <p>제4조(지원대상)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·보안등의 설치 및 보수 2. 하수도 보수 및 준설 3.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의 설치 | <p>제4조(지원대상) (원안과 같음)</p> |

및 보수

4.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.

제5조(지원방법) ①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회장(이하“관리주체”라 한다)에게 통보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알려야한다.

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입주자(임차인)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「별지세1호서식」으로 군수에게 설치 및 관리비용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③군수는 제2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토론 한다.

④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사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를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.

제6조(위원회구성) ①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9인 이하의 화순군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되 비상설로 운영한다.

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

제5조(지원방법) ①(원안과 같음)

②(원안과 같음)

③(원안과 같음)

④(원안과 같음)

⑤(원안과 같음)

제6조(위원회구성) ①(원안과 같음)

②(원안과 같음)

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위원회의 위원은 기획감사실장, 사회복지과장, 건설과장, 도시경제과장, 재난안전관리과장, 군의원, 화순군 사회단체장, 건축사 각 1인으로 구성한다.

③-----

-----, 건축사 각 1인 및
군의원 2명으로 구성한다

제7조(위원회의기능) ①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제출한 지원신청의 적정성 여부 및 우선순위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한다.
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집행 가능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.

제7조(위원회의기능) ①(원안과 같음)

②(원안과 같음)

제8조(위원장등의임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.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.

제8조(위원장등의임무) ①(원안과 같음)

②(원안과 같음)

③(원안과 같음)

제9조(회의)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(제3항 신설)

제9조(회의) ①(원안과 같음)

②(원안과 같음)

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,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0조(수당등)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

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화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순군보조금관리조례 및 화순군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.

제12조(운영규칙) 위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10조(수당등) (원안과 같음)

제11조(준용) (원안과 같음)

제12조(운영규칙) (원안과 같음)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주택법」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종합계획수립) 화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①지원대상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단,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관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

②지원내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.

제4조(지원대상)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 사용 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.

1. 단지내 도로 및 가로등·보안등의 설치 및 보수
2. 하수도 보수 및 준설
3.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의 설치 및 보수
4.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

제5조(지원방법) ①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회장(이하 “관리주체”라 한다)에게 통보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알려야한다.

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입주자(임차인)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제1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설치 및 관리비용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③군수는 제2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한다.

④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안에 사업이

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.

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를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.

제6조(위원회 구성) ①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9인 이하의 화순군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두되 비상설로 운영한다.

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③위원회의 위원은 기획감사실장, 사회복지과장, 건설과장, 도시경제과장, 재난안전관리과장, 건축사 각 1인 및 군의원 2명으로 구성한다.

제7조(위원회의 기능) ①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제출한 지원신청의 적정성여부 및 우선순위 지원대상사업을 심의한다.

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집행 가능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.

제8조(위원장등의임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.

제9조(회의)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,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0조(수당 등)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화순군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화순군보조금관리조례」 및 「화순군재무회계규칙」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2조(운영규칙) 위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